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의료급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질문 또는 검사 수행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개정(제20035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절차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 업무지원 내용, 지원인력 운영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규정 (안 제1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0.00 ~ 0.00.)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검사업무의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질문 또는 검사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업무지원의 내용,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검사업무의 지원) <u>보건복지 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및 대행정구단체에 대한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u>	제18조(검사업무의 지원) ① <u>보건 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 질문 또는 검사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 지부장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업무지원의 내용, 업무지원 인력 의 편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u> ② <u>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 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u>